‘26. 10.

2027년 (재)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원 동의(안)

스 마 트 유 통 과

2027년 (재)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원 동의(안)

의 안 번 호	2026-104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김제시 먹거리 생산-소비-유통 등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출연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3항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※ 2027년도 김제시 세출예산 반영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 :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

《 설 립 개 요 》

❖ 설립근거 : 「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」
❖ 설 립 일 : 2025. 6. 2.
❖ 설립자본금 : 100백만원
❖ 주요기능 : 지역먹거리 생산-가공-유통-소비 등 관련사업
❖ 조직구성
- 이사회 : 9명 (이사장 1, 상임(센터장) 1, 비상임 5, 감사 2)
- 사무국 : 3팀 12명(기간제 포함 19명)
* 인원구성 : 일반직 12명(센터장 1, 경영지원팀 3, 공공급식팀 5, 생산관리팀 3)
기간제 7명(배송 3, 소분·포장 4)

나. 출연금액 : 1,200백만원(시비)

다. 2027년 본예산 편성요구(안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25년	2026년	2027년	비고(편성기간)
계	600	1,200	1,200	
재단법인 인력운영	245	759	812	'25. 4. ~ 12. : 9개월 '26년, '27년 : 12개월
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사업비	355	441	388	

라. 출연목적

○ 지역 내의 농업인 소득증대, 주민의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공공형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

○ 공익성을 담보로 한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안정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

마. 출연효과

○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 및 농업인 소득증대

○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형성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주민복리 증진

○ 지역 식품가공산업 육성, 공공급식 확대 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

바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,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「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(운영재원)

3. 따로붙임

○ 출연금 지원 동의(안)

○ 출연금 심의요구서

○ 출연기관 현황

○ 2027년 (재)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계획(안)

○ 도내 시·군 재단법인 운영 현황

○ 관련법령 발췌서

○ 방침결정문

붙임1 **출연금 지원 동의(안)**

2027년 (재)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원 동의(안)

지역 농업인 소득증대와 시민의 안전먹거리 생산-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, 김제시의회는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.

1. 출 연 대 상 :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

2. 출 연 금 액 : 금1,200,000,000원(금일십이억원)

3. 출연 필요성

○ 지역 내의 농업인 소득증대, 주민의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공공형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

○ 공익성을 담보로 한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안정 운영을 위한 운영예산 지원 필요

4. 근 거 법 령

○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0조

○「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」제11조

붙임2 **출연금 심의요구서**

주관부서	스마트유통과	과 장	팀 장	주무관	전 화
		임미경	이준호	박소현	3627

기관명	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
출자·출연대상	○ 개 요 - 소 재 지 : 김제시 백산로 23(흥사동) - 이 사 장 : 김제시장 - 설립취지 : 김제푸드플랜 추진, 공익성·공공성 확보, 지역경제 활성화 등 - 주요사업 : 지역먹거리 생산-가공-유통-소비 등 관련사업
출자·출연 사 업 비	○ <u>출연 예정금액 : 1,200백만원</u>(시비)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백만원)

구 분	사업기간	2026년 예산액	2027년 요구액*	재원별				
		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출 연 금		1,200	1,200	-	-	-	1,200	-
재 단 법 인 인 력 운 영	2027. 1. ~12.	759	812	-	-	-	812	-
먹 거 리 통 합 지 원 센 터 운 영 지 원		415	373	-	-	-	373	-
직 원 워 크 숍 및 의 무 교 육		8	3	-	-	-	3	-
농 가 조 직 화 기 획 생 산 체 계		8	10	-	-	-	10	-
영 양 교 사 간 담 회		10	2	-	-	-	2	-

출자·출연 필 요 성	○ 지역 내의 농업인 소득증대, 주민의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 필요 ○ 공공성을 담보로 김제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,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구심적 역할을 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지원 필요
근거·법령	○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
지도감독 부서의견 (종 평)	○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먹거리 공급량의 원활한 유통시스템 및 예측 가능한 지역생산-지역소비 시스템 구축하여 김제시 푸드플랜 추진 기반 및 동력 확보 ○ 농축수산인에게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 및 소득 증대와 공공성·공익성을 담보로 사업영역 확장 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첨부자료	1. 출연기관 현황 2. 2027년 (재)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계획(안) 3. 관련법령

붙임3 출연기관 현황

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

설립근거	법 률 : 민법 제32조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: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		
주요연혁	2021.11.24. (재)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25. 2.28. (재)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창립총회 개최 2025. 4.14. (재)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허가 2025. 6. 2. (재)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법인 설립 등기 2025. 12. 26. (재)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관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출연기관

직원현황 ('26. 8월 기준)	계	정규직	비정규직
	19명 (정규직 + 비정규직)	12명 (센터장 1, 직원 11)	7명 (배송 3, 소분 4)

임원현황	직 책	성 명	주요경력	임 기
	이 사 장	정○주	김제시장	'25.02.28.~'27.02.27.
	이 사	이○종	농업기술센터소장	'25.02.28.~'27.02.27.
	이 사	구○숙	동김제농협 황산지점장	'25.02.28.~'27.02.27.
	이 사	최○일	김제시 농촌지도자연합회장	'25.02.28.~'27.02.27.
	이 사	이○원	김제시 민생경제협의체위원장	'25.02.28.~'27.02.27.
	이 사	신○순	전)김제시 백구면장	'25.02.28.~'27.02.27.
	상임이사	한○진	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	'25.07.21.~'27.07.20.
	감 사	임○경	김제시 스마트유통과장	'25.07.09.~'27.02.27.
	감 사	서○환	서주환 세무사사무소 대표	'25.02.28.~'27.02.27.

주요사업
1.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체계 구축 2.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지역 가공 활성화 사업 3. 학교·공공·복지급식 활성화사업 4. 생산·유통·소비 각 단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5. 농업·농촌 관련 정보제공 사업 6.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음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 7. 인근 지역과 연계한 제휴푸드 사업 8.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등

자본금 (단위 : 백만원)	기본순재산	100	출자·출연액 (단위: 백만원)	1,200

최근 3년간 예산 현황 (단위 : 백만원)	연 도	2024	2025	2026	재무현황 (단위: 백만원) '25. 결산 기준	자 산	461
	예산액	-	600	1,200		부 채	63
						자 본	398

붙임4 **2027년 (재)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계획(안)**

사 업 명	재단법인 김제지평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스마트유통과 먹거리지원팀		출연	1,200백만원(시비)

□ 목 적

○ 지역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공급하여 지역 내 농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소득기반 마련

○ 급식 수요량 중심으로 안정적인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품목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

⇨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으로 김제시 농업경제 선순환 실현

□ 관련근거

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

○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11조(운영재원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7. 1. ~ 12.

○ **사 업 비 : 1,200백만원(시비)**

- 재단법인 인력운영 : 812백만원
-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: 373백만원
-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구축 : 10백만원
- 학교·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사업 : 비예산
- 재단법인 직원 워크숍 및 의무교육 : 3백만원
- 영양교사 간담회 : 2백만원

□ 주요내용

연번	사 업 명	예산 (천원)	운영개요	비고
1	재 단 법 인 인 력 운 영	812,480	❍ 사업내용 : 센터 인력 운영예산(19명) • 인건비 762,480 • 퇴직급여 20,000 • 기관 경영평가급 30,000 ❍ 인력운영(안) - 일반직 : 12명 (센터장 1, 경영지원팀 3 , 공공급식팀 5, 생산관리팀 3) - 기간제 : 7명(소분 및 피킹 4, 배송 3)	
2	먹거리통합 지 원 센 터 운영 지원	372,520	❍ 사업내용 : 센터 운영 필수 경비 • 사무관리비 114,660 - 일반수용비(사무용품, 소모품 등) 14,400 - 수수료 및 안전관리 위탁관리비 38,060 - 위원회 등 수당 4,000 - 임차료 58,200 • 공공운영비 109,040 - 공공요금 및 제세 등 74,480 - 차량 선박비 34,560 • 복리후생비, 회의비 등 4,600 • 여비, 직무수행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40,560 • 수선유지비, 연금부담금 등 103,660	
3	농가조직화 기 획 생 산 체 계 구 축	10,000	❍ 사업대상 : 관내 농업인 200여명 ❍ 사업내용 : 출하농가회 구성 및 운영, 계약재배 교육 및 간담회, 선진지 견학 등	
4	학 교 급 식 식 재 료 공 급 사 업	비예산	❍ 사업대상 : 유·초·중·고 31개교 6,227명 *조리학교 기준 ❍ 사업내용 : 김제시 학교급식 식재료 통합공급 추진 - 수발주 업무 : eaT 계약을 통한 수발주 및 정산, 클레임 관리 (교환, 감량, 반품 등) - 입출고 업무 : 품목별 입출고(농축수, 가공품 등), 월별 재고관리 - 정산업무 : 농가 및 공급업체 대금정산(매입·매출 거래처 등)	
5	공 공 급 식 식 재 료 공 급 사 업	비예산	❍ 사업대상 : 보육돌봄시설 51개소, 김제시청(본청 및 농업기술센터) 등 ❍ 사업내용 : 지역산 급식 식재료 공급	
6	재 단 직 원 의 무 교 육	3,000	❍ 사업대상 : 재단법인 소속 직원(기간제 포함) ❍ 사업내용 : 직장내 법정 의무교육, 선진지 견학	
7	영 양 교 사 간 담 회	2,000	❍ 사업대상 : 관내 농업인 및 학교 영양교사(30~50명) ❍ 사업내용 : 상생협력 간담회, 시책발굴 견학 워크숍 등	

붙임5 도내 시·군 재단법인 운영 현황

(단위 : 억원)

구분		(재)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	(재)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	(재)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
설립일		2015. 9.	2020. 9.	2021. 5.
자본금		기본 1, 운영 2.5	기본 1, 운영 8	기본 1, 운영 3.5
규 모		연면적 1,760㎡ / 25억 ('25년 90억 규모 신축)	연면적 6,566㎡ / 38억	연면적 2,584㎡ / 57억
사업영역	사업	공공급식, 학교급식, 김치사업관	공공급식, 학교급식	공공급식, 학교급식, 기업원재료공급 (하림 및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)
	직매장	2개소 직영 (송천점, 효천점)	2개소 직영 (박물관, 경암동)	1개소 직영 (모현점)
인 력		46명 (정규직 19, 실무직 20, 기간제 7명)	65명 (정규직 27, 실무직 12, 기간제 26)	37명 (정규직 12, 실무직 9, 기간제 16) *배송물류 외부위탁
출연금	'22	30	10	8
	'23	32	9	16.4
	'24	31	8.5	15
	'25	30	8.5	15.8
	'26	31	11.5	17
'25 매출 (순이익)		217 (6)	181 (0.4)	171 (0.2)

붙임6 **관련법령 발췌서**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(약칭: 지방출자출연법)

[시행 2026. 1. 2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, 타법개정]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6. 7. 1.] [법률 제21328호, 2026. 2. 5, 일부개정]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

[시행 2021. 11. 24.] [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조례 제1458호, 2021. 11. 24., 제정]

제11조(운영재원)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붙임7 **방침결정문**

지평선에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

문서번호	스마트유통과-1510호
보존기간	5년
결재일자	2026. 9. 9.

주무관	팀 장	과 장	소 장	부시장	시 장	결재
박소현	이준호	임비경	이승공	이현서	정성주	
협 조	예산팀장 최지아 기획감사실장 서재민 의회법무팀장 이혜진					

[재]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
2027년 출연금 편성계획(안)

김 제 시
스마트유통과